

안동시의회 공고 제2021-59호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안 동 시 의 회 의 장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시행), 같은 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前 「지방자치법」 삭제 조문 반영(제45조)
- 나.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5조)
- 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64조의2)
- 다.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64조의3)
- 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안 제64조의4)
- 마.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10조, 제14조, 제45조, 제52조, 제76조, 제88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2. 3. ~ 2021. 12. 8.(5일 이상)

4. 의견제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21년 12월 8일까지 안동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또는 직접방문

1) 전자우편 : flora99@korea.kr

2) 주 소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의회

3) 팩 스 : 054-840-640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의원”을 “위원회 또는 의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그러나”를 “이 경우, 기록표결과 같은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게재”를 “공개”로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

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64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4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안동시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의회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 ----- ----- ----- ----- ----- -----.</p> <p>제8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한다.</p>	<p>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p>
<p>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p> <p>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법 제72조제1항-----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p>	<p>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p>

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서 개정 2016·12·30>

제45조(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
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전자투표 또는 기립이나 거수하
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
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
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
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
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
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위원회 또는 의원-----.

제45조(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
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
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 -----

----- . 이 경우, 기록표결과
같은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
여야 한다. 다만 --- 제1항---
-----.

<삭 제>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⑤ (생략)

<신설>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 공개-----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

<신 설>

<신 설>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
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

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
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
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64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
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
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
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4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
조-----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략)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단서개정 2020·9·11>

④·⑤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법 제99조-----

-----.

④·⑤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

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회회의 의장과 지방회에서 선출한 지방회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회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회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회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회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회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회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회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회회는 지방회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회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회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회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회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회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회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인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2.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3.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 4.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5.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6.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 7.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 15일 이상

2. 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포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受理)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